

처분통지(창업기획자 시정명령) 공시송달

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에 따른 처분을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처분의 제목	시정명령 (이행기간 14일)					
당사자	성명(명칭)	㈜오더 (대표이사 김희익)				
	주 소	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24, 6층(삼성동, 세화빌딩)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㈜오더는 수시점검('21.12.17) 결과, 등록된 소재지에서 창업기획자 업무 및 보육 등을 하지 않음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4조, 제2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36조제1항제2호, 제3호 및 <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> [별표 2] 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함(이행기간 14일)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<p>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(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)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2호 :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, 다만 임원이 제2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창업기획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. · 제3호 : 제25조에 따른 방법을 위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전문보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					
처분담당자	기관명	중소벤처기업부	부서명	투자회수관리과	담당자	오세영
	주 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80,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			전화번호	044-204-7726
	전자우편주소	roach530@korea.kr			팩스번호	-

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 및 <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> [별표 2] 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합니다.

2022년 2월 7일

<알 립 사 항>

1.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,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소기업부장관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(서면 또는 온라인)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2.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무료로 국선대리인

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, 온라인 행정심판(www.simpan.go.kr)을 통하여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2022년 2월 07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